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210540(본소), 2018가합21055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용역비]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23623(본소), 2020나23630(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합21054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모병철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이인애, 장정훈

변론 종결2020. 6. 4.

판결 선고2020. 6.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4,6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6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05,28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50,259,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8. 6. 20.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0. 11. 20.부터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E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 F조성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D은 원고에게 덤프운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덤프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이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

1) 2016. 5. 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6. 5. 12. 피고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내 하도급받은 공사 중 토사에 관한 덤프운반 용역을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용역계약서

1. 과업명: 사토운반 용역
2. 과업장소: E지구 F 조성공사 현장
3. 과업범위: 상기 현장과 관련된 영내 덤프운반 일체
4. 과업기간: 2016.5.12. ~ 2018.5.31.
5. 계약금액: 3,126,710,900원, 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지급조건: 매월 마감 후 45일 이내(현금지급 조건)
(단, 현장 출력대장에 의한 단위당 직불조건)
7. 계약조건: 4) 발주처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수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내역서

품목	규격				
(1) 부지내덤프운반	토사, L=606m(덤프15t)	m ³	2,115,781	800	1,692,624,800
(2) 부지내덤프운반	풍화암, L=471m(로더2.87m ² +덤프15t)	m ³	353,104	1,000	353,104,000
(3) 부지내덤프운반	연암, L=546m(로더2.87m ² +덤프20t)	m ³	328,012	1,100	360,813,200
(4) 부지내덤프운반	보통암, L=546m(로더 2.87m ² +덤프20t)	m ³	654,699	1,100	720,168,900

2) 피고의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 등의 수행 피고는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따라 2016. 6. 10.부터 2017. 5. 31.까지 사토운반 용역을 수행하였고, 수행 중 유물 조사 및 지장물로 인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고 공사 진행이 지연되자 야간 및 휴일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연약지반가도공사와 관련하여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암, 보통 암 등을 운반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덤프운반 용역과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각 변경

1) 덤프운반 용역계약 체결과 변경 (가) 2016. 5. 18. 용역계약

원고는 2016. 5. 18.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덤프운반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용역계약서

1. 용역명: 부지내덤프운반용역
 2. 용역장소: E지구F조성공사
 3. 계약기간: 2016년 5월 18.일 ~ 2018년 7월 14.일
 4. 계약금액: 일금 사십팔억사천오백육십이만일천원정(₩4,845,621,000)
- 공급가액: 일금 사십사억오백일십일만 원정(₩4,405,110,000)
- 부가가치세: 일금 사억사천오십일만일천 원정(₩440,511,000)

(나) 2017. 5. 20. 변경용역계약(1차)

원고는 2017. 5. 20. D와 사이에 운반거리 변경 및 이로 인한 단가변경, 거리별 운반량의 변경을 이유로 위 2016. 5. 18.자 용역계약 중 용역대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제1차 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용역계약서(1차)

1. 계약변경사항

가. 계약금액: 일금 오십일억삼천오백일십삼만 원정(₩5,135,130,000)

공급가액	4,405,110,000	263,190,000	4,668,300,000
부가가치세	440,511,000	26,319,000	466,830,000
계약금액	4,845,621,000	289,509,000	5,135,130,000

(다) 2018. 2. 7. 변경용역계약(2차)

원고는 2018. 2. 7. D과 사이에서 운반거리 변경 및 이로 인한 단가변경, 거리별 운반량의 변경을 이유로 위 2016. 5. 18.자 용역계약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제2차 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용역계약서(2차)

1. 계약변경사항

가. 계약금액: 일금 오십삼억구천칠백사만 원정(₩5,397,040,000)

공급가액	4,668,300,000	238,100,000	4,906,400,000
부가가치세	466,830,000	23,810,000	490,640,000
계약금액	5,135,130,000	261,910,000	5,397,040,000

(라) 2018. 6. 5. 변경용역계약(3차)

원고는 2018. 6. 5. D과 사이에 이 사건 덤프운반 용역계약을 타절하기로 하면서 위 2016. 5. 18.자 용역계약 중 운반량을 변경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는 내용으로 제3차 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용역계약서(3차)

1. 계약변경사항

가. 계약금액: 일금 오십억오천삼백칠십삼만 원정(₩5,053,730,000)

공급가액	4,906,400,000	-312,100,000	4,594,300,000
부가가치세	490,640,000	-31,210,000	459,430,000
계약금액	5,397,040,000	-343,310,000	5,053,730,000

나. 계약기간: 변경(3차) : 2016년 5월 18.일 ~ 2018년 6월 5.일

2)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한편 원고는 2016. 5. 20. D과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도저운반 용역

포함하는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약지반가도조성 및 작업로 정비를 포함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D 사이의 건설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건설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도급공사명 : E지구F조성공사

2. 하도급공사명 : 토공 및 구조물공사

3. 공사장소: E지구F조성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6년 5월 20.일 / 준공 2018년 7월 14.일

5. 계약금액: 일금 사십칠억삼천칠십삼만칠천 원정(₩4,730,737,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35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10. 2.자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따라 사토 3,451,596㎥를 운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6.경까지만 사토 3,191,596㎥만을 운반하고, 나머지 사토 260,000㎥의 운반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나머지 사토 운반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2,890,956,893원만 지급받아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용역대금 3,168,385,1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277,428,207원(= 3,168,385,100원 ~ 2,890,956,893원) 중 일부로서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8, 9, 10, 11,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2019. 7. 15.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팀장이었던 G는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운반한 일일 덤프운반수량을 수기로 집계하였는데, 덤프대수당 적량의 적재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그 운반량은 2017. 5. 31.을 기준으로 3,448,784㎥이었다.

② 원고는 G에 의하여 매일 피고의 덤프대수를 집계한 집계표를 토대로 토취장 운반집계표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 벽에 붙여 놓고 피고가 운반한 누적 토사 운반량을 집계하였다.

③ 2016. 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에 설치한 계측기로 피고덤프의 실적재 수량을 실측한 결과 초과하여 사토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6. 11. 11. D 소속 직원은 G에게 용역 수행 중인 피고의 덤프를 보내라고 하여 이에 G는 무작위로 정하여 덤프를 보냈는데, G는 이를 직접 계근하여 과적을 확인하였으며, 1일 실적재량을 감안하여 운반량을 예상한 결과 피고의 토사 운반량을 3,820,863㎥으로 집계하였다.

④ G는 원고의 도저운반 용역이 내역서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 보고 하였고 원고의 전무는 피고가 덤프로 작업한 수량 중 일부를 원고가 도저 운반한 것으로 기성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G는 2016. 11.부터 2017. 3.까지 월별 기성조서를 피고가 운반한 덤프 운반량을 원고가 도저 운반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⑤ 원고가 2016. 7. 및 8.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도저를 이용하여 덤프가 운반하기 원활하게 작업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의미할 뿐 토사를 운반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G와 H는 도저 작업을 하여야 할 거리에 덤프로 운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화재의 존재 및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구체적이면서도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이러한 증언은 이 법원의 D에 대한 2018. 10. 2.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의 원인과도 부합한다.

⑦ G와 J는 원고의 도저운반 양은 540,320㎥인데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덤프로 운반했다고 서로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⑧ 원고가 도저운반을 했다는 계약물량 중 10%정도에 불과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공사 과장이었던 H는 추후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끝난 이후에는 이미 덤프로 다 메웠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⑨ 원고 회사의 G 또는 H는 피고가 운반한 작업수량, 내용, 용량, 시간 내용을 확인하여 작업확인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매일 정리하여 기입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H가 매일 작성하여 원고가 보관한 토취장 운반집계표에 의하면 2017. 5. 31. 기준으로 피고의 토사 운반량 3,448,784루베(토사량 2,599,022루베, 암 849,762루베)로 되어있다.

⑩ 피고는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사토를 초과 운반하였고, 다만 공사 현장에서 작성되는 일일집계표 등에는 기준치를 항상 실제 사토의 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용역대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미지급한 용역대금 177,967,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용역대금 등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 7의 4)항과 같이 발주자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수량의 증감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유물조사나 지장물 발생으로 인하여 운반경로가 변경되어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의 사토운반과 관련한 사토의 수량 및 단가 등이 증액되거나 피고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의 1, 2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 317,722,963원, 원고의 지시에 따른 피고의 야간, 휴일 공사로 인한 연장근로할증 비용으로서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98,668,232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차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용역대금 미지급분

439,333,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약지반가도 공사대금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 운영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지반을 보강하는 내용의 연약지반가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연약지반가도 조성비로 69,223,077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중 연암, 보통암 운반비 상당액 10,92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용역대금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3,126,710,9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부터 2017. 7.까지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3,485,223,6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지급된 용역대금 중 먼저 2017. 6. 지급 용역대금 160,956,290원과 2017. 7. 지급 용역대금 1,254,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7. 5. 31.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완료한 점,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직불요청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트럭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점,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및 7. 용역대금에 대한 직불요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6. 및 7. 용역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과 무관하게 원고가 트럭기사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 6. 및 7. 용역대금 합계 162,210,290원(= 160,956,290원 + 1,254,000원)은 위 지급된 용역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작업로 정비비용으로 지급된 5,6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8. 8. 27.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D은 작업로 정비에 관한 비용을 덤프운반 용역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지급한 점, 원고는 K에게 작업로 정비비용을 별개의 약정에 따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작업로 정비비용을 이 사건 용역대금에

포함시키기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5,600만원도 위 지급된 용역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지급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 302,092,12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302,092,120원도 위 지급된 용역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고 주장 기지급 용역대금 3,485,223,610원에서 520,302,410원(= 2017. 6. 및 7. 용역대금 162,210,290원 + 작업로 정비비용 5,600만 원 + 부가가치세 302,092,12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은 2,964,921,2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61,789,700원(= 3,126,710,910원 - 2,964,921,200원)에 피고가 구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6,178,200원 합계 177,96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용역대금 등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 용역대금 지급 약정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서에는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당시와 실제 공사현장 상황이 다르게 되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공사나 용역을 진행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또는 용역의 시행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전제한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발견된 유물 조사와 지장물로 인하여 당초 설계 운반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여 D과 원고 사이에 1, 2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원고와 D 사이의 3차 변경계약은 타절로 인한 미운반 토사량에 관한 정산인데, 피고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의무를 완료하였고, 3차 변경계약에서 발생한 미운반 토사량은 원고가 피고의 토사

운반량을 원고의 도저 운반인 것처럼 전용한 결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제1, 2차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는 D로부터 증액된 용역대금 317,722,963원(1차 변경계약 시 토질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155,736,760원 + 2차 변경계약 시 토질변경 및 운반거리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161,986,203원)을 지급받았다.

④ 위 제1, 2차 변경계약 및 용역대금의 증액은 원고의 덤프운반 용역에 관한 것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덤프운반 추가 용역을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이를 수행하였고 2017. 5. 31.까지 완성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 7의 4)항만으로는 설계변경시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용역대금, 연장근로할증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사업기본법 제3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증액을 받은 그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에게 비용 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을 4,257,886,08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용역을 3,126,710,900원에 재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D로부터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1차로 254,404,992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대금 155,736,760원 + 연장근로할증비용 98,668,232원), 2차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대금 161,986,203원 합계 416,391,195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법리를 고려하여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D로부터 추가로 받은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토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05,770,250원(= 원고가 D로부터 받은 추가대금 416,391,195원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대금 3,126,710,900원 /

원고와 D 사이의 용역(공사)대금 4,257,886,060원,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약지반가도 조성비 중 연암, 보통암 운반비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연약지반 가도 조성공사를 맡게 된 점, ② D은 원고에게 연약지반 가도 조성공사비로서 69,223,077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지시로 2016. 12.경 당시 이 사건 사토운반 용역계약에 기한 운반용역을 수행 중이던 피고의 덤프를 이용하여 연약지반가도 공사 중 연약지반에서 퍼낸 진흙을 피고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 파인 지반에 다시 자갈 등을 메꾸는 작업을 수행한 점, ④ 당시 연약지반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토사 운반 수량은 9,933㎥인 점, ⑤ 원고와 피고는 연암, 보통암 운반비를 1㎥당 1,100원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약지반 가도 조성공사 중 피고의 운반용역과 관련된 추가 용역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연약지반가도 조성비 중 연암, 보통암의 운반비 상당액인 10,926,300원[= 9,933㎥ × 1,100원(1㎥당 운반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94,664,450원[= 미지급 용역대금 177,967,900원 + 추가 용역대금 305,770,250원 + 연약지반가도 조성비 중 운반비 10,92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1. 28.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환

판사김현우

판사김민정